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9일, 김위상의원 등 12인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2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25. 7.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6. 4. 1.) 상정, 축조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6. 4. 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위상의원)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식지를 보전하고, 자연상태에서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복원하는 조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소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과 II 급으로 나누어 지정·관리되고 있음.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 및 종 증식·복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과 정밀한 서식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강설 패턴 등 기후 변화로 인한 먹이 부족 등으로 멸종 위기 야생생물 I 급인 산양이 폐사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서식지 주변의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는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 수립을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존 조문과 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기존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조치 조항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및 그 주변’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